

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 산정기준 공고

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(방통위 고시 제2011-53호, 2011.12.26.)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라 2015년도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 지정을 위한 '2014년도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 산정기준'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. 10. 31.

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

1.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단가(단위 : 분당)

구분	자막방송	수화통역방송	화면해설방송
	2,185원	3,701원	12,242원

※ 상기 평균제작단가는 2015년 고시의무사업자 지정을 위한 목적으로 산출한 단가로서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<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단가 산정방식>

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단가 =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총계¹⁾ ÷ 장애인방송 편성시간 총계²⁾

1) 개별사업자('13년도 118개사) 장애인방송 제작비(본방송 기준) 총계

2) 개별사업자('13년도 118개사) 장애인방송 편성시간(본방송 기준) 총계

※ 2013년도 장애인방송 제작지원사업 참여사업자(118개사)의 장애인방송 유형별 제작비 및 장애인방송 편성시간(본방송 기준) 적용

2.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 산정기준

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 =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단가 × 장애인방송 편성시간¹⁾

1) 장애인방송 편성시간 = 연간방송시간 × 본방비율 ×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

※ 연간방송시간 및 본방비율 : 「2013년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」 적용
단, 2013년도 방송산업실태조사의 실적자료가 기재되지 않은 사업자(채널)의 경우 : 실태조사에 명시되어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(SO)·방송채널사용사업자(PP) 매체별 사업자(채널) 전체의 본방비율·방송시간 평균 적용

※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: '고시 제2011-53호'의 2015년도 장애인방송 대상 방송사업자별 편성비율 목표치 적용

※ 복수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(PP)의 장애인방송물 제작비는 '13년 시청 점유율 0.2% 이상인 각 채널의 장애인방송물 제작비를 합산하여 산정